

등록번호	정책기획담당관-2201
등록일자	2015.2.10.
결재일자	2015.2.10.
공개구분	부분공개(5)

주무관	예산팀장	정책기획담당관	부구청장
권세호	나윤수	代유병선	02/10 조인동
협 조	주민자치국장 이경현		

2015년 기금운용 기본계획



서대문구
정책기획담당관

2015년 기금운용 기본계획

일반회계와 구분되는 기금의 특수한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을 확립하여 기금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용으로 재정 건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

I 개 요

- 설치현황 :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개 기금
- 총 규 모 : 15,844백만원
- 기금현황

(단위:백만원)

기 금 명	소관부서	설치근거별	목적별	규 모	비 고
1. 중소기업육성기금	일자리경제과	법정재량	용 자	4,832	
2. 사회복지기금(자활계정)	사회복지과	자체기금	관 리	1,260	
3.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	사회복지과	자체기금	관 리	584	
4. 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	어르신 청소년과	자체기금	관 리	556	
5. 성평등기금	여성가족과	자체기금	적립/관리	1,195	
6.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	청소행정과	자체기금	용 자	1,286	
7. 옥외광고정비기금	건설관리과	법정의무	적 립	605	
8. 도로굴착복구기금	토 목 과	자체기금	관 리	1,438	
9. 재난관리기금	안전치수과	법정의무	적립/관리	3,012	
10. 식품진흥기금	보건위생과	법정의무	용자/관리	1,076	

Ⅱ 기금 운용의 문제점

□ 기금의 목적외 사용

-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거나 조례로 정하여 기금을 운용하는 바, 당초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운영
 - 공모과정에서 기금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이 선정되는 사례 발생

□ 일반회계 자원부족에 대한 보완적 재원으로 활용

- 일부 기금의 경우 일반회계와 기금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을 수행하는 사례가 있음
 - 일반회계의 부족재원을 기금재원을 활용하여 사업 수행

□ 기금 수입 예측의 어려움

- 과태료, 이행강제금,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및 각종 공모사업의 포상금이나 보조금의 경우 기금 수입 예측이 어려움
 - 보조금교부 등 수입·지출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, 즉시 기금계획변경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 발생

Ⅲ 기본방향

□ 기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

- 기금조례에 명시된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 계획(안)수립, 기금계획변경, 공모사업선정 시 모니터링 강화
 - 기금 지출계획 수립(기금운용계획 수립)시 기금 조례 및 설치 목적에 맞지 않게 편성 하였을 경우 예산부서 협의·심의 과정에서 미편성조치 등 모니터링 강화

기금의 성과분석을 통한 폐지·통합 여부 결정

- 설치목적을 달성하였거나,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폐지·통합 검토

기금 일몰제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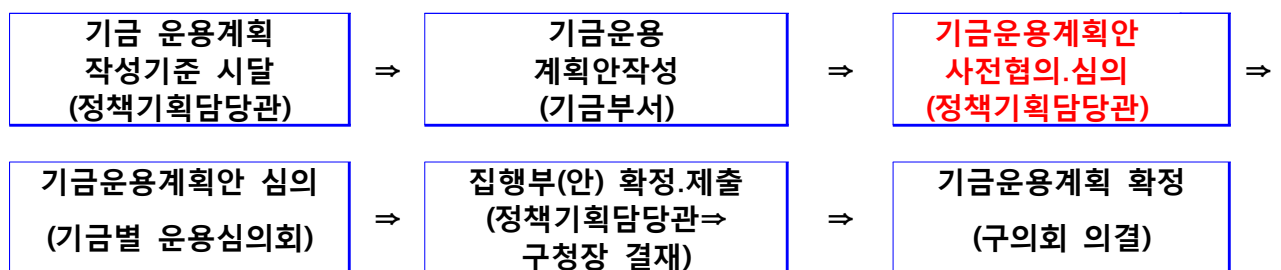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토록 하고 있고, 의무적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의 일몰제 적용(5년)으로 관리 강화
 - 우리구 10개 기금에 대해 '15년 1월까지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 명시 조치 완료
 - 향후 기금 존속기한 완료 시, 기금 설치 목적에 대한 달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여 존속 여부 결정.

IV 향후 대책

기금운용의 사전 통제기능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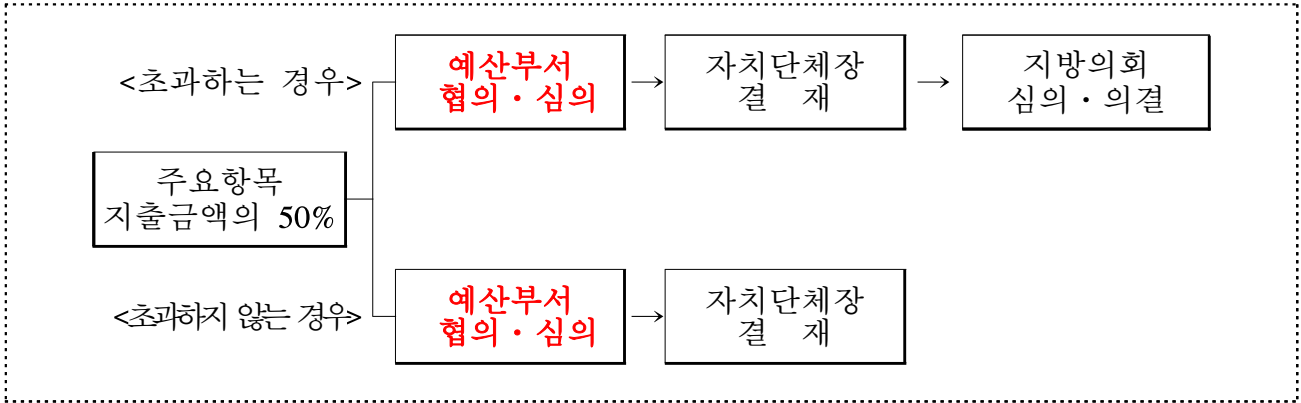
- 기금운용계획 수립, 변경시 예산팀의 사전 협의 등 통제기능 강화

〈 기금운용계획 수립 흐름도 〉



□ 기금수입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실시

- 공모사업 등의 보조금 교부 시, 즉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회 승인(정책사업의 50%이상 변경 시)후 기금운용계획 변경 조치



□ 기금운용계획 수립, 기금성과분석 등 기금운용위원회의 대면심의 강화
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기금운용계획수립, 기금운용계획변경 등의 절차 수행 시, 관행적인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 실시
- ※ 시급성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서면심의 금지. 끝.